

2022년 모두누림센터 여성비전센터교육 학습동아리 모집 안내

2022년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모두누림센터 여성비전센터교육 학습동아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, 많은 신청바랍니다.

- 모집기간 : 2022. 04. 11. (월) ~ 04. 22. (금) 18:00 까지 (12일간)
- 모집대상 : 여성비전센터교육 정규과정 수강생 및 수료생 6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
- 모집내용
 - 신청자격
 - 여성비전센터교육의 심화학습을 위해 6인 이상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(해당강좌에 대한 주제로 활동)
 - 강좌 학습 이후 재능 기부나 나눔을 목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구성한 동아리(1365 자원봉사활동점수 부여)
 - 활동기간 : 2022. 05. 02. ~ 11. 25.
 - 지원사항 : 주1회 3시간 강의실 대관 및 시설물 사용
- 신청방법 : 모두누림센터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글에서 서식파일을 다운받아 신청서 작성 후 가족사업팀 이메일(family@hswf.or.kr)로 첨부하여 제출
 - 제출 시 파일명: 2022학습동아리신청서_강좌명
- 선정 절차 및 방법
 - 재단에서 자체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접수된 신청서를 심사표에 따라 채점
 - 100점 만점 중 총점 70점 이상인 동아리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
- 발 표 : 2022. 04. 27. (수) 10:00, 모두누림센터 홈페이지 및 동아리 대표자 개별 통보
- 기타사항
 -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하게 작성된 신청서는 심사 대상 제외
 - 모든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 - 선정된 이용계획(이용 일자 및 요일, 신청 공간)은 신청자와 협의 후 조정될 수 있음
- 이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학습동아리 담당자(☎ 031-350-4337)에게 문의

신청자 유의 사항

(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규칙 제33호에 의함)

- 학습동아리 등록 요건

- 정규 교육 과정 수강생 및 수료생 등 6인 이상으로 구성될 것
- 교육 과정 수강 혹은 수료 후 해당 교육 강좌에 대한 주제로 활동할 것
- 동일한 분야는 1개의 동아리만 인정됨

- 학습동아리 운영

- 선발된 동아리는 센터의 정규 프로그램과 동아리의 성격을 고려하여 강의실 배정
- 강의실은 학습동아리별 주1회 최대 3시간 이용 가능
- 동아리는 월 1회 이상 활동해야 하며 활동 후 활동일지 작성·제출
- 자원봉사활동 동아리의 경우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고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

- 학습동아리 준수사항

- 학습을 위한 지정된 요일, 시간, 장소 준수
- 타 강좌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금지
- 강의실 사용 후 시설물 관리, 정리정돈 (시설물 파손 또는 분실 시 변상조치)
- 학습동아리 활동일지 정확하게 기재해야 함

- 학습동아리 등록 취소사항

-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여 사용 허가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
- 영리 또는 정치·종교 활동 등을 하는 경우
-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안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- 회원수가 6명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월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을 경우
- 그 외 센터장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

- 학습동아리 봉사로 인정되는 활동

- 화성시여성비전센터 가족사업팀과 사전 협의된 봉사활동
- 자원봉사의 공익성(공공성, 비영리성), 무보수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자원봉사활동



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| 여성비전센터

[참고] 화성시여성가족청소년재단 제33호 화성시여성비전센터 교육운영 규칙

제4장 동아리

제16조(학습동아리) ① 센터는 봉사활동 또는 교육강좌의 심화학습을 희망하는 수강생 및 수료생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동아리는 수강생 또는 수료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대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한다.

③ 동아리 구성원들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제13조를 준용한다.

제17조(동아리 등록 요건) 동아리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.

1. 동아리 회원은 본 센터 교육과정 수강생 또는 수료생들로 구성되어야 한다.
2. 회원이 6명 이상이어야 한다.
3. 센터 교육강좌를 수강 혹은 수료 후 해당 교육강좌에 대한 주제로 활동해야 한다.
4. 동일 교육강좌에서 둘 이상의 동아리는 만들 수 없다.

제18조(동아리 등록신청) 동아리로 신규 등록을 할 경우 별지 제6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9조(동아리 승인) 동아리의 등록 요건이 제17조를 충족할 경우 센터 내 강의실 여건을 고려하여 승인한다.

제20조(동아리 승인취소) 승인된 동아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다.

1. 등록 목적과 상이한 활동을 하는 경우
2. 센터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거나 운영목적에 위배 될 경우
3. 등록신청서 및 활동계획안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
4. 회원 수가 제17조 2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월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
5. 종교 및 영리활동을 하는 등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6. 그 외 센터가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

제21조(동아리 활동보고) ① 동아리는 활동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동아리가 자원봉사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학습동아리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센터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③ 동아리는 자원봉사활동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자원봉사 활동일지 및 증빙사진을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22조(시설사용) ①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은 동아리 회원에 한하며, 주1회 3시간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동아리 발표회, 대회 참여 등 연장시간이 필요한 때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사용한다.

② 제1항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, 센터는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.